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287

발의연월일: 2021. 5. 21.

발 의 자:이해식·김영배·서영석

서영교 · 김성환 · 김철민

위성곤 · 주철현 · 노웅래

이형석 · 민형배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 및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 준인 시가표준액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구간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재산세율을 각각 조정하고 특례조항을 9억원 이하의 주택까지확대함과 동시에 세율을 낮추고, 특례적용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및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 5천만원 초과 3.6억원 이하	120,000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6억원 초과	540,000원+3.6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제111조의2, 제112조"를 "제112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제1113	<u> </u> 의2(1	세대	1주	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1	제11]	[조제
1항지	13호니	-목에!	도 불	구하.	고 대
통령	렁으로	. 정ㅎ	누는	1세대	1주
택(저]4조제	1항에	叫	른 시]가표
준액	o) <u>69</u>	<u> 억원</u>	이하	인 주	택에
한정	한다)여	에 대	해서	는 디	음의
세율	을 적-	용한디			

행

혅

<u>과세표준</u>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30,000원+6천만원
1억5천만원 이하	<u>초과금액의 1,000분의 1</u>
1억5천만원 초과	120,000원+1억5천만원
<u> 3억원 이하</u>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420,000원+3억원
<u> 3억원 초과</u>	<u>초과금액의 1,000분의 3.5</u>

② ~ ④ (생 략)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u>11</u>조의2, 제112조 및 제113조의 <u>12조</u>-----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 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11조	:의2(1	세대	1주	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1		
	-9억원				

정

개

안

<u>과세표준</u>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30,000원+6천만원		
1억5천만원 이하	<u>초과금액의 1,000분의 1</u>		
1억5천만원 초과	120,000원+1억5천만원		
3.6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6억원 초과	540,000원+3.6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 제2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 세 세율 특례의 유효기간) 제1 세 세율 특례의 유효기간) 제1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u>.</u>